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589

발의연월일: 2024. 9. 3

발 의 자 : 윤후덕 • 이훈기 • 박주민

김정호 · 임오경 · 최기상

차지호 · 정준호 · 김주영

홍기원 · 박 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130조제2항은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 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어 국민 투표권자와 국회의원선거권자를 일치시키고 있음.

한편, 2020. 1. 14.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됨에 따라현행법의 국민투표권 조항은 헌법의 관련 규정과 체계가 맞지 않음.

이에,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 변경함으로써 헌법과 체계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

법률 제 호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19세 이상의 국민"을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7條(投票權) 19세 이상의 國民	第7條(投票權) 「공직선거법」 제
은 投票權이 있다.	<u>15</u>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에 따라 국회의원의 선거권
	<u>이 있는 국민</u>